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3 선고 2014가단5264326 판결 [구상금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1. A

2. B

변론 종결2015. 4. 21.

판결 선고2015. 5. 13.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2,957,826원과 그 중 42,701,808원에 대하여 2014. 9. 2.부터 2014. 9. 30.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10.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1.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0. 7. 10. 접수 제40378호로, 순번 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4. 7. 10. 접수 제29435호로 각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A은 2007. 8. 23. 위 피고가 우리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을 채무에 관하여 보증원금 42,500,000원, 보증기간 2008. 8. 22.까지(그 후 보증기한이 2014. 8. 14.로 연장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2007. 8. 23. 위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발급받은 보증서를 제출하고 소외 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또 원고와 피고 A은 2009. 3. 11. 위 피고가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채무에 관하여 보증원금 32,500,000원, 보증기간 2010. 3. 10.까지(그 후 보증기한이 2015. 3. 6.로 연장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2009. 3. 11. 위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발급받은 보증서를 제출하고 소외 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서 피고 A은 소외 은행에 위 대출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소외 은행에 대위변제하였을 경우에 원고에게 대위변제금액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2014. 9. 12. 기준 연 12%이다)에 따른 지연손해금 및 원고의 보증채무가 주채무를 이행하여야 한 날까지 소멸하지 아니하면 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날 또는 보증료가 납부된 기간의 만료일의 익일부터 원고의 대위변제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잔존하는 주채무에 대하여 보증내규에 의하여 적용한 보증료에 0.5%를 가산한 율에 의한 위약금과 원고가 채권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 A은 2014. 7. 2. 당좌부도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소외 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2014. 9. 2. 소외 은행에게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42,979,551원(이 사건 제1신용보증계약 원금 34,425,000원, 이자 312,908원, 이 사건

제2신용보증계약 원금 8,125,000원, 이자 116,64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같은 날 피고 A으로부터 277,743원을 회수하여 이를 이 사건 제1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대위변제한 원금에 충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신용보증계약에 대한 91원의 확정손해금이 발생하였다.

바. 원고는 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보전비용 등으로 213,487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제1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위약금으로 42,440원이 발생하였다.

사. 한편 피고 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채권자이던 피고 B와 사이에 2014. 7. 10. 채권최고액 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접수 제4037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순번 2. 기재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B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접수 제2943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42,957,826원(대위변제원리금잔액 42,701,808원 + 확정지연손해금 91원+ 채권보전비용 213,487원 + 위약금 42,440원)과 그 중 위 42,701,80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9. 2.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4. 9. 3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7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미 채권발생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 A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 이전인 2014. 7. 2. 당좌부도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키는 등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2014. 9. 2. 소외 은행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기존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채권자만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해 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A이 자신의 기존의 채권자이던 피고 B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 B의 선의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피고 A과는 고향 선후배 관계로 피고 A에게 사업자금을 빌려 준 것이 있어 이를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일뿐 당시 자신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피고 A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선의의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을 제나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전에 피고 A에게 상당한 금원을 빌려주고, 이를 회수하기 위함 방법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B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피고 A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B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문세

별지